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수사기관의 증거은닉·날조 혐의
고소·고발에 관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4. 1. 7.(화) 오전 11시, 민변 사무실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 사회 : 천낙봉 변호사(민변 통일위원장)

■ 순서

1. 기자회견 참석자 소개

2. 경과보고 (김유정 고소 대리 변호사)

3. 고소 사실 설명_PPT 자료 (김진형 고소 대리 변호사)

4. 고소인 발언(유우성)

5. 질의응답

§. 고소장 별첨

고 소 장

고 소 인 유우성(*****_*****)

위 고소인의 대리인
별지목록과 같음

피고소인 성명불상자

국가보안법위반(무고·날조)

고 소 취 지

피고소인들은 2013. 2. 및 2013. 9.경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증거를 날조·은닉하였기에 고소하오니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이 유

1. 당사자 관계

고소인은 재북화교로 2004. 4.경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로써,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2.경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 받고(증 제 1호증 판결문),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있는 피고인입니다.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증거를 은닉

하고 날조한 자들으로써, 위 국가보안법 위반의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를 담당 하였던 수사기관이거나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들입니다.

2. 범죄사실

가. 이 사건의 경위

1) 수사 과정

본건 수사는 재북화교였던 고소인의 여동생 유가려가 2012. 10.경 대한민국에 정착하고자 입국하여 북한이탈주민으로 신고하고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이하 '합동신문센터'라고 합니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조사 초기에 유가려가 재북화교임이 밝혀졌음에도 국정원 수사관들은 비보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유가려를 상대로 고소인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국정원 수사관들은 유가려에게 '오빠 유우성이 간첩임을 자백하면 오빠와 함께 남한에서 살게 해 주겠다'고 회유하거나, 유가려의 몸에 '회령화교 유가리'라고 쓴 종이를 붙인 뒤 탈북자들이 다니는 길에 세워놓고 구경을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습니다(증 제2호증 유가려 증인신문조서, 증 제3,4호증 각 수사관 증인신문조서, 증 제5호증 라행옥 증인신문조서 참조).

합동신문센터 내에서의 조사는 본래 위장탈북 여부를 밝히기 위한 것이지만, 본건의 경우 유가려는 본인 및 오빠 유우성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를 위해 약 6개월 동안 독방에서 감금생활을 해야 했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변호인의 접견이 불허되었으며, 진술 당시 회유와 가혹행위 등으로 거짓 자백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2) 1심에서 제출된 증거

수사기관은 1심에서 고소인의 국가보안법위반의 증거로써 “2012. 1. 21. 및 2012. 1. 23.경 고소인이 북한에서 찍었다는 사진”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증 제6호증 증거목록, 증 제7호증 각 사진). 그러나 고소인이 북한에서 본인의 아이폰으로 찍었다는 위 사진들은 검증결과 모두 중국에서 찍은 사진들로 밝혀졌습니다(증 제8호증 보고서 참조).

나아가 위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던 고소인의 노트북 파일에는 위 사진들 이외에도 다른 사진들(고소인이 2012. 1. 22. 23:13경 및 2012. 1. 23. 23:53경 중국 연길에서 찍은 사진으로, 당시 고소인이 북한에 들어가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무죄의 증거)도 있었으나 피고소인들은 의도적으로 무죄의 증거가 되는 사진들을 은닉하고 제출하지 않았습니다(증 제9호증 각 사진).

또한 고소인에 대한 통화기록의 경우에도 피고소인들은 2012. 12.경 수사단계에서 이미 위 통화기록을 확보하여 고소인이 2012. 1. 23.경 중국에서 통화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2. 1. 23.경 밀입북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고 위 통화기록은 제출하지 않고 은닉하였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이 2012. 1. 22. 및 2012. 1. 23. 저녁 중국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명확해지자, 재판이 끝나갈 무렵 위 통화기록을 추가로 제출하면서 2012. 1. 23. 밤부터 1. 25. 오전까지는 통화기록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하였습니다(증 제10호의1 최초 공소장, 증 제10호증의2 공소장변경허가신청, 증 제11호증 검사 증거제출, 증 제12호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및 통화내역).

3)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

검찰은 항소심에 이르러 고소인의 국가보안법위반죄의 증거로 “출입경기록”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증 제13호증의1 2013. 11. 1.자 검사 증거신청, 증 제13호증의2 증거목록, 증 제14호증 화룡시 공안국 발급 출입경기록). 그러나 고소인이 중국 연변 조선족자치주 공안국에서 발급받은 출입경

기록과 비교, 검토해 본 결과, 검찰이 화룡시 공안국으로부터 입수하였다고 하면서 증거로 제출한 출입경기록은 허위로 조작된 증거였습니다.

가) 2006. 5. 27.경 출입경기록 변조

고소인이 중국 연변 조선족자치주 공안국에서 공식적으로 발급받은 출입경기록 상에는 “入境(입경) 2006. 5. 27. 10:24:55 入境(입경) 2006. 5. 27. 11:16:36 入境(입경) 2006. 6. 10. 15:17:22”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증 제15호증의1 연변 조선족자치주 공안국 발급 출입경기록, 증 제15호증의2 위임장, 증 제15호증의3 번역본),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에는 “入境(입경) 2006. 5. 27. 10:24:55 出境(출경) 2006. 5. 27. 11:16:36 入境(입경) 2006. 6. 10. 15:17:22”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검찰은 위 허위의 출입경기록을 제출하면서 고소인이 2006. 5. 27. 10:24:55 중국으로 입경했다가 다시 2006. 5. 27. 11:16:36 북한으로 출경한 것이고 이후 2006. 6. 10. 15:17:22에 다시 중국으로 입경했으므로 고소인이 2006. 5. 하순경에 북한에 있었음이 확실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실제 출입경기록 상 “入境(입경) 2006. 5. 27. 10:24:55” 기록 이후의 “入境(입경) 2006. 5. 27. 11:16:36 入境(입경) 2006. 6. 10. 15:17:22” 기록은 전산상의 오류에 해당하는 것으로(증제16호증의1 상황 설명서, 증 제16호증의2 공증서), 이는 당시 고소인과 함께 입경했던 친척들의 출입경기록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오류였습니다(증 제17호증의1,2 각 출입경기록 참조).

검찰의 주장(2006. 5. 하순경 삼합세관을 통해 북한으로 출경했다는 것)은 검찰이 공소장에서 고소인이 2006. 5월 하순경 ‘두만강 도강을 통해’ 재차 입북하였다고 한 공소사실과도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중국 현지에서 중국 변호사를 통해 해당기관에 확인한 결

과, 화룡시 공안국은 출입경기록에 대한 공식발급기관이 아니고, 국민의 출입경기록은 '연변 조선족자치주 공안국'에서 일괄관리하고 있으며, 실제 중국 화룡시 공안국에서는 위와 같은 출입경기록 공문을 발급해 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증 제18호증의1 연변 조선족자치주 공안국 대화 녹음파일, 증 제18호증의2 연변 조선족자치주 공안국 동영상, 증 제19호증 화룡시 공안국 동영상, 증 제22호증 연변 조선족자치주 공안국 대화 녹음파일의 녹취록, 증 제23호증 연변 조선족자치주 공안국 동영상의 녹취록, 증 제24호증 화룡시 공안국 동영상 녹취록, 증 제25호증의 1,2 중국변호사 인증서, 번역본).

<참고> 고소인이 발급받은 출입경기록과 검찰 제출 출입경기록 비교

刘家刚	入境	中国	男	1980-10-26	A019055	2006-06-10-15:17:22	三合
刘家刚	入境	中国	男	1980-10-26	A019055	<u>2006-05-27-11:16:36</u>	
刘家刚	入境	中国	男	1980-10-26	A019055	2006-05-27-10 24:55	<고소인 발급-연변조선족 자치주>

刘家刚	入境	中国	男	1980-10-26	A019055	2006-06-10-15:17:22	三合
刘家刚	出境	中国	男	1980-10-26	A019055	<u>2006-05-27-11:16:36</u>	
刘家刚	入境	中国	男	1980-10-26	A019055	2006-05-27-10:24:55	

<검사측 제출- 화룡시>

나) 공증 도장의 허구성

또한 위 검찰 제출의 출입경기록에는 출입경기록 자체에 공증도장이 찍혀 있는데, 중국의 공증기관은 위와 같이 공문서 자체에 공증도장을 찍지 않을뿐더러 찍혀진 공증도장은 중국 화룡시 공증처에서 사용하는 공증도장이 아니라고 합니다(증 제20호증 화룡시 공증처 동영상, 증 제26호증 화룡시

공증처 동영상 녹취록).

<참고> 검찰제출 출입경기록의 공증과 실제 중국의 공증서 양식 비교



즉, 검찰 제출의 출입경기록은 중국의 공증기관에서 공증을 받은 것이 아님에도 마치 공증을 받아 공신력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조작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다) 소결

① 화룡'시' 공안국은 출입경기록에 대한 공식발급기관이 아니고, 국민의 출입경기록은 상위 관청인 중국 연변 조선족자치'주' 공안국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다는 점, ② 실제 중국 화룡시 공안국은 위와 같은 출입경기록을 발급해준 사실이 없다고 하는 점, ③ 검찰이 제출한 2006. 5. 27.자 출입경 기록을 원본과 비교하였을 때 위조·변조사실이 명백한 점, ④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에 찍힌 도장이나 공증방법은 실제 중국에서 상용되는 것이 전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위 출입경기록은 고소인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위해 허위로 조작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나. 증거의 날조·은닉

1) 해당 법률규정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날조) 제1항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 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증거의 날조

‘날조’란 증거를 허위로 조작해 내는 것을 말하는데, 형법상(제155조 제1항)의 ‘위조·변조’는 물론 ‘위조·변조한 증거의 사용’도 이에 포함됩니다¹⁾.

여기서 ‘위조’란,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데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나 범죄사실과 아무런 관계없는 물건을 이용하여 그것이 범죄사실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경우도 모두 위조라 할 수 있습니다. ‘변조’란 진정한 증거에 가공하여 그 효과를 변경하는 것으로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부를 불문합니다.

‘사용’이란 진정한 증거로서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제공의 상대방은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의 경우 법원이 될 것이며, 공소제기 후에 검사에게 위

1) 황교안, 「국가보안법」, 박영사, 2011, 517쪽

조 증거를 제공하는 것도 사용에 해당합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항소심에 이르러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은 그 출처를 알 수가 없고, 그 일부가 고소인이 2006. 5. 27. 11:16:36 북한에 출경한 것처럼 변조되어 있으며, 찍혀 있는 공중도장 역시 위조된 것으로 허위로 조작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① 고소인의 출입경기록이 위조·변조되었다는 사실, ② 위와 같이 위조·변조된 출입경기록이 고소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유죄의 증거로 법원에 제출되었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따라서 위 출입경기록이 언제 누구에 의해 위조·변조되었고, 어떤 경위로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었는지가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3) 증거의 은닉

‘은닉’이란 증거로서의 현출을 곤란하게 하도록 숨기는 것으로서, 물적증거의 경우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이 2012. 1. 22. 및 1. 23.경 중국에서 찍은 사진을 의도적으로 증거에서 배제하고, 중국에서 찍은 사진을 북한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주장하면서 밀입북 증거로 제출한 행위는 증거은닉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고소인이 2012. 1. 23.경 중국에서 통화한 내용이 기록된 통화기록을 확보하였음에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 알리바이가 입증되자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제출한 행위도 증거은닉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3. 결 론

2) 이회창, 「주석 형법Ⅲ [각칙 (1)]」, 한국사법행정학회, 1997, 384~385쪽

국가보안법 제12조가 무고·날조죄를 규정하여 엄격히 처벌하고 있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적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악용하여 선량한 국민에게 필요 없는 제약을 가하거나 무고한 시민을 국가보안법위반 범인으로 몰아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반국가사범에 대한 국가형벌권행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고소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와 기소는 처음부터 왜곡된 증거에 기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일부 증거는 수사기관에 의해 의도적으로 은닉되었으며, 일부 증거는 허위로 위조·변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이 보호하고 있는 법익인 “국가의 형사사법작용 또는 수사권발동의 적정”을 위해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위반의 증거를 날조·은닉한 행위를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 거 목 록

1. 증 제1호증	판결문
1. 증 제2호증	유가려 증인신문조서
1. 증 제3호증	오철수(가명) 수사관 증인신문조서
1. 증 제4호증	정영숙(가명) 수사관 증인신문조서
1. 증 제5호증	라행옥의 증인신문조서
1. 증 제6호증	증거목록
1. 증 제7호증	각 사진(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사진)
1. 증 제8호증	보고서
1. 증 제9호증	각 사진(검찰이 은닉한 사진)
1. 증 제10호증의1	공소장

- | | |
|-----------------|----------------------------|
| 1. 증 제10호증의2 | 공소장변경허가신청 |
| 1. 증 제11호증 | 검사 증거제출 |
| 1. 증 제12호증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및 통화내역 |
| 1. 증 제13호증의1 | 2013. 11. 1.자 검사 증거신청 |
| 1. 증 제13호증의2 | 증거목록 |
| 1. 증 제14호증 | 화룡시 공안국 발급 출입경기록 |
| 1. 증 제15호증의1 | 연변 조선족자치주 공안국 발급 출입경기록 |
| 1. 증 제15호증의2 | 위임장 |
| 1. 증 제15호증의3 | 번역본 |
| 1. 증 제16호의1 | 상황설명서 |
| 1. 증 제16호증의2 | 공증서 |
| 1. 증 제17호증의1,2 | 각 출입경기록 |
| 1. 증 제18호증의1 | 연변 조선족자치주 공안국 대화 녹음파일 |
| 1. 증 제18호증의2 | 연변 조선족자치주 공안국 동영상 |
| 1. 증 제19호증 | 화룡시 공안국 동영상 |
| 1. 증 제20호증 | 화룡시 공증처 동영상 |
| 1. 증 제21호증 | 삼합세관 통화 녹음파일 |
| 1. 증 제22호증 | 연변 조선족자치주 공안국 대화 녹음파일의 녹취록 |
| 1. 증 제23호증 | 연변 조선족자치주 공안국 동영상의 녹취록 |
| 1. 증 제24호증 | 화룡시 공안국 동영상 녹취록 |
| 1. 증 제25호증의 1,2 | 중국변호사 인증서, 번역본 |
| 1. 증 제26호증 | 화룡시 공증처 동영상 녹취록 |

2014. 1.

위 고소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 천 낙 봉

변호사 장 경 욱

법무법인 율

변호사 양 승 봉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김 용 민

변호사 김 진 형

법무법인 정평

변호사 김 유 정

경찰청

귀중